

제289회 임시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481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국공립 안암 어린이집 신축)



행정기획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국공립 안암 어린이집 신축)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명 주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481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2. 3. 31.
- 회 부 일 : 2022. 4. 1.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²⁾에 의거하여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여 영유아 공공보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성북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국공립 안암어린이집)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함.

1)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대상 재산

소재지	대지면적(m ²)	구 분	연면적(m ²)	금액(천원)	비 고
안암동2가 140-3(일부)	282.1	취득 (건물 신축)	564	2,061,017	신축
안암동2가 140-4(일부)	282.1	처분 (건물 멸실)	540	241,656	건물 기준가격

다. 신축개요

- 위 치 : 성북구 안암동2가 140-3 (고려대로8길 7-2)
- 기 간 : 2022. 3. ~ 2023. 6.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립규모 : 지상3층 (대지면적 282.1m² / 연면적 564m²)
- 소요예산 : 2,061,017천원

※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 의한 추정금액

- 층별 면적 및 용도

구 분	용 도	면 적
지상 1층	보육실, 원장실, 조리실, 화장실	188m ²
지상 2층	보육실, 유희실, 화장실	188m ²
지상 3층	보육실, 교사실, 화장실	188m ²
합 계		564m ²

※ 층별 규모, 용도 등은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배경

- 국공립 안암어린이집은 1988년 준공되어 34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2019년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체 및 벽체 일부 균열이 확인되는 등 종합평가 C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조치가 필요함
- 안암 어린이집 경계에 위치한 뱀바위어린이공원 토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부지를 확보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안암 어린이집은 1988년 준공 후 34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안전한 보육환경 확보를 위해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안암 어린이집과 바로 경계에 접한 범바위어린이공원 토지 일부를 신축부지 확보하여 재원 영유아의 환경변화를 최소화하였음.
- 2021년 서울시 제5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에 통과되어 소요예산 20억 6,100만 원 중 국비 4억 7,763만 원, 시비 14억 7,748만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부담금은 사업비의 5%인 1억 290만 원임.
- 사업규모는 기존 건축물 총면적 540㎡에서 564㎡로 24㎡ 증가되며, 건물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에서 지상 3층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신축건물의 추정가격은 20억 6,100만원으로 18억 1,936만 원의 재산가액 증가가 기대됨.
- 2015년 대비 2020년 기준 출생아 수 42%, 합계출산율 47% 감소³⁾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보다는 노후화된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하여 공간 재배치를 통한 보육공간 확보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5년~2020년)